

제325회 정례회

2013. 12. 10(화)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설 소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문홍열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김재종 의원 외 6명

2. 발의 및 회부일자

가. 발의일자 : 2013년 10월 31일

나. 회부일자 : 2013년 11월 6일

3. 제안이유

「하천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점용료 등의 조정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추어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 제3조)

- 해당 연도의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 ⇨ 5퍼센트 이상 증가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한 용어 순화 등(안 제5조, 제6조, 제9조)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상위법령의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하천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비해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해야 함으로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거나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6. 검토의견

가.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상위법령인 「하천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